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신청 기한을 10일→20일로 연장〉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4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2
가. 재정신청제도	2
나.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정신청 기한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내용임(안 제260조제3항).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①·② (생략)	제260조(재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10일</u>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 ----- ----- ----- <u>20일</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재정신청제도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 제도

임.1) 재정신청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사의 소추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이자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짐.²⁾

재정신청권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서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로써,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³⁾

한편,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⁴⁾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함(항고전치주의).⁵⁾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한 것은 고소인

1) 노태약 외,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10. p.889

2) 배종대·홍영기, 「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20. 8., p.191

3)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검사에게 자체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취지임.⁶⁾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0조제3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정신청 기한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 및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등의 항고기간이 30일로 보장된 상황(「검찰청법」 제10조제4항)에서, 재정신청 기한이 연장될 경우 고소인 등의 권리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피고소인 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인 재정신청제도 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기간 7일),⁷⁾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 7일)⁸⁾ 등 형사

6) 노태약 외, 앞의 책, p.892

7)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8)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소송법 상 다른 불복제도의 제기기간과 비교하여 균형적인 관점에서 재정신청기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48